

#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및 평생교육원 규정 개정(안) 공고

## □ 학칙 개정(변경) 사유

- ▷ 평생교육원에 명예학생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45세 이상 장년 및 노년층의 평생학습실현 도모.
- ▷ 학칙에 명예학생(청강생) 과정을 반영하여 선발 및 수료증 수여를 명시하도록 함.
- ▷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4조에 명예학생 특별과정을 신설하고자 함.

## □ 학칙 주요 개정사항

- ▷ 제11장 명예학생(청강생) 규정 신설

※ 세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신 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1장 외국인학생,시간제등록생,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은행제)등록생</p> <p>제56조의14(상담창구의 운영)-----</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제11장 외국인학생,시간제등록생,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은행제)등록생,명예학생(청강생)</p> <p>제56조의14(상담창구의 운영)-----</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제56조의15((명예학생(청강생) 선발 및 수료증 수여)) ①일반성인을 대상으로 명예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료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선발 및 수료 절차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56조의15 조항목 신설 요청사항</p>

#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개정 전문 수정 사항

## 제9장 납입금

제49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금은 매 학년도말 이전에 연액으로 정하여 1, 2학기 등록기간 전에 나누어 고지한다.

제50조(휴학 및 복학자의 납입금) 등록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에게는 당해 휴학기간의 납입금을 면제하되, 복학 시에는 복학 당해 학기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 당시의 납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8.9.1>

제51조(납입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와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반환한다.

② 전항의 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표개정 2004.10.8.><표개정 2011.02.11.><표개정 2021.2.3.>

사 유 발 생 시 기	반 환 금 액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까지	납입금 전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제10장 장학금

제52조(장학금) ① 학업성적,品行,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장 외국인학생,시간제등록생,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은행제)등록생,명예학생(청강생)

<개정 2016.5.27>

제53조(위탁생) <삭제>

제54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을 거쳐 입학정원외 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으로서 각 학부(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제55조(외국인 특별생의 편입)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학력을 검정한 후 정규학생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제목변경 및 개정 2008.9.1>

제56조(외교관 자녀) <삭제>

제56조의2(시간제등록생, 평가인정학습과정등록생) 일반사회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6.5.27>

제56조의3(선발시기) 선발시기는 매학기 초 수업일수 4분의1선 이내로 한다.

제56조의4(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하며,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대학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의5(선발인원 및 방법) ①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 모집단위별 정규학생의 입학정원 내로 한다.<개정 2009.1.6><개정 2009.12.01><개정 2011.02.11><개정 2011.08.05>

②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이나 졸업증명서,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한다.<신설 2009.1.6><개정 2009.12.1>

제56조의6(등록 및 수강신청) ① 시간제등록생은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신청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 이내로 하며, 신청교과목은 당해 학기 전일제 학생 개설 교과목 중에서 한다. 단, 여러 대학에 시간제 등록을 한 경우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1.6>

제56조의7(학점인정) 본교 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인정된 취득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단, 본교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학점인정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8(학점취득) ① 학위수여를 위하여 필요한 취득학점은 총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최저 8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위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는 본교 전일제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부(과)별 최저 이수 요구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56조의9(학위수여) ① 본 학칙 제28조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초 4주 이내에 학사학위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신청서를 제출한 시간제등록생에게는 졸업사정을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증서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56조의10(수업) ① 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은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수업운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온라인 수업비율은 평생교육진흥원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에 준하며 교육과정은 각 학부의 교과과정을 따른다.<조신설 2009.1.6><개정 2009.12.01.><개정 2016.5.27>

③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 과정 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5.27.>

④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5.27.>

제56조의11(출석 및 수업관리)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출석 및 수업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조신설 2016.5.27.>

1.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교수 및 강사는 출석부에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평생교육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의12(성적평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성적평가는 학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세부 운영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한다.<조신설 2016.5.27.>

제56조의13(학적관리 등) ①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학적관리 자료를 영구 보존한다.

②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 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③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도록 한다.<조신설 2016.5.27.>

제56조의14(상담창구의 운영)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운영한다.<조신설 2016.5.27.>

제56조의15((명예학생(청강생) 선발 및 수료증 수여)) ①일반성인을 대상으로 명예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료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선발 및 수료 절차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신 구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p>제4조(교육과정) ① 본 교육원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점은행제</li> <li>2. 독학학위과정</li> <li>3. 자격증 취득과정</li> <li>4. 전문교육과정</li> <li>5. 일반교양과정</li> </ol>	<p>제4조(교육과정) ① 본 교육원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점은행제</li> <li>2. 독학학위과정</li> <li>3. 자격증 취득과정</li> <li>4. 전문교육과정</li> <li>5. 일반교양과정</li> <li>6. 명예학생 특별과정</li> </ol>	제4조 6항 항목 추가사항

## 예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개정 전문 수정 사항

### 평생교육원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예원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과 예원예술대학교 경기드림캠퍼스 평생교육원(이하 “본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4.3.1.><개정 2016.2.15>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국제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하여 대학의 자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본 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

제3조(소재지) 본 교육원은 예원예술대학교 전북희망캠퍼스와 경기드림캠퍼스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각 지역에 본 교육원의 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3.1.><개정 2016.2.15>

제3조의 2(하부조직) 경기드림캠퍼스 내에 게임교육센터를 두며, 게임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게임교육센터 규정을 따로 정한다.<신설 2017.5.10>

제4조(교육과정) ① 본 교육원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둔다.<개정 2015.1.13>

1. 학점은행제
2. 독학학위과정
3. 자격증 취득과정
4. 전문교육과정
5. 일반교양과정
6. 명예학생 특별과정

② 제1항의 각 과정에 개설하고자 하는 세부과정은 본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5.1.13>

제5조(정원) 본 교육원의 강좌별 정원은 본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5.1.13>

제6조(수업) 본 교육원 수업은 각 과정별 특성에 맞게 주간, 야간 및 계절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7조(교육장소) 교육 장소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교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